

대구지방법원 2021. 4. 1 선고 2020가단12349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대구광역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

담당변호사 이춘희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변론 종결2021. 3. 11.

판결 선고2021. 4. 1.

주 문

1. 대구 수성구 I 도로 102m²에 대하여,

가. 피고 C, D, E, F, G, H에게,

1)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. 10. 25. 접수 제10782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,

2)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8. 4. 11. 접수 제1824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피고 C, D, E, F, G, H은 원고에게 각 1/6 지분에 관하여 2001. 7. 2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A, B, C, D, E, F, H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G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변지영

별지